

# 생명자원과학연구원규정

## 제 1 조 (명칭)

본 연구원은 경희대학교 부설 생명자원과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칭한다

## 제 2 조 (목적)

연구원은 식량자원의 개발, 생산, 이용, 유전공학의 기초 및 응용 등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국가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3 조 (소재)

연구원은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에 둔다.

## 제 4 조 (사업)

본 연구원은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식량 및 유전공학분야의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2. 학술정보의 교환 및 학술자료 편찬
3. 기타 연구원의 목적과 관련된 사업

## 제 5 조 (조직)

1) 본 연구원은 원장, 부원장 1인, 연구부장 2인, 간사 2인 및 감사 2인의 임원을 두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원장은 본교 전임교원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연구원을 대표하고 연구원의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3) 부원장은 본교 전임교원중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원장을 보좌하고 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연구부장은 본교 전임교원중에서 원장이 위촉하며, 해당분야의 연구활동을 총괄한다.

5) 연구부서는 전문분야별로 다음 2개의 연구부로 구성된다.

1. 제 1연구부 : 식량과학에 관한 기초 및 응용 연구
2. 제 2연구부 : 유전공학의 기초 및 응용 연구

6) 간사는 연구원의 운영사무를 관장하며, 본교 전임교원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7) 감사는 원장이 임명하며, 본 연구원의 회계처리업무 등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원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제 6 조 (연구원 등)

본 연구원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연구원, 특별연구원, 보조 연구원을 둘 수 있다.

1. 연구원은 본교 전임교원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2. 특별연구원은 본교 전임교원 이외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위촉한다.
3. 보조연구원은 본교 대학원 석사과정 이상의 재학생으로서 연구원 또는 특별연구원의 추천에 의해 원장이 위촉한다.

## 제 7 조 (운영위원회)

1) 본 연구원에는 원장, 부원장, 연구부장으로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2) 운영위원회는 본 연구원의 주요사업 및 정책에 관한 심의를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겸한다.

4) 위원회는 원장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청에 의해 소집한다.

## 제 8 조 (재정)

본 연구원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1. 기금 및 그 수익금
2. 보조금

3. 수탁연구비
4. 기타 수익금

제 9 조 (집행)

연구원의 예산 및 결산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한다.

제 10 조 (회계)

- 1) 연구원의 예산은 본교예산에 포함하여 편성하되 독립된 예산계정으로 운영한다.
- 2) 회계년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 11 조 (규정 개정 및 해산)

연구원의 규정 및 해산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199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의 시행과 더불어 식량자원개발 연구소 규정과 유전공학연구소 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